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40

발의연월일: 2024. 7. 29.

발 의 자:정점식·박형수·김미애

정희용 • 박덕흠 • 구자근

고동진 · 강선영 · 김태호

장동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, 특별회계를 통하여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,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부재하여, 이들 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·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78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조제2항제1호가목에 1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)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어 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

바.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8조(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	제78조(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
세출) ① (생 략)	세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	2
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	1
사업에 대한 보조	
가. 성장촉진지역, 특수상황	가
지역, 농산어촌 및 도시	
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	
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	
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	
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	
과 관련한 사업	
1) ~ 11) (생 략)	1) ~ 11)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2)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</u>
	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	에 따른 농어촌 및 벽지
	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
	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
	<u>하</u>
나. ~ 마. (생 략)	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바.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
	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
	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업
<u>바.</u> (생 략)	<u>사.</u> (현행 바목과 같음)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